

수원지방법원 2024. 3. 5 선고 2023가단13349 판결 [건물명도등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4. 3. 5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

가. 별지 1.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,

나. 4,600,000원 및 2023. 11. 4.부터 위 가.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시까지 월 300,000원의
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2.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적용법조 : 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)

판사 문기선

별지